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0. 23.(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1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5차, 제4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7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47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2014-48-16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이라고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분야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이 지원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도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내용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연구·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말까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이 안건 제출자는 부위원장님인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자격으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또 고삼석 위원님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안건이 잘 정리된 것 같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안 제12조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송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현재는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몰라서?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아니면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려고 생각하는 업무는 있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조사·연구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위탁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도지사'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규에 넣기 때문에 저희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개발해야겠지만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업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연구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업무를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12월 시행이기는 한데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크게 이슈나 쟁점도 없었으니까 법제처 심사를 신속하게 해서 꼭 11월 말까지..., 지금 법제처 업무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 시행령은 크게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속하게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공포까지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추가해서 답변 드리면 위임·위탁 부분 관련해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밀착형, 그러니까 지역 사정에 보다 더 밝고 또 지역방송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업무들은 시·도지사에게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시·도지사 의견을 법상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권한의 위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인력과 조직을 필요한 만큼 확대시키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되어서는 항구적인 대책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사·연구·인력양성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기구가 모라자서 제대로 못 하는 일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업무의 일부,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현실감이 있는 정책을 보다 더 잘 채택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나 유통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더 낫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했고, 구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아직 발굴을 못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중앙행정기구가 지자체에 업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한데 저는 방통위도 언젠가는 지방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이 전적으로 각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도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방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절름발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 다 위임하는 식으로 가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유념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다음 2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해도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법에 보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서 시행령에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급히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행령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 혹시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각 중앙부처들이 소위 말해서 특별지방행정관청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기청, 환경부 등 많이 있지만 앞으로 중앙의 국가 사무가 갈수록 지자체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방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지자체와 연결고리가 필요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지방조직과 병행해서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연계 업무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방송사들이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협찬이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특별법 틀 안에 잘 포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자체의 관심도 촉구하고 참여도 유도하고, 결국에는 지역방송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관련 시행령을 검토했던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방송발전에 대한 책무는 중앙정부를 대표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게 그러한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일정 정도 같이 저희와 공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12월 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방송사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즉,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문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검토하겠습니다. 문건으로 협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삼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모르고 시책을 마련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해서 공문 형태든 또는 간담회 형태든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거론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가 최근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 구현을 위한 핵심조직 가운데 하나인 교양제작국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PD협회 등 MBC 안팎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 PD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줌 남아 있는 교양국을 해체하고 프로그램마저 폐지하는 것은 MBC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장면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영역인 교양국을 해체하려면 차라리 공영방송 포기선언을 먼저 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몇 년 사이에 MBC의 공공성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3년 MBC 경영평가보고」에 따르면 공영방송 MBC는 방송의 다양성과 유익성은 물론 신뢰성·공정성·공익성 면에서 민영방송인 SBS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의 공공성과 공정성 하락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시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MBC는 다양성·신뢰성·유익성·공정성·공익성 등 5개 항목 모두 다른 지상파방송사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양제작국마저 해체한다면 MBC 경영진 스스로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MBC 경영진이 국회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MBC를 아끼는 많은 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및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UHD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지상파방송사들의 대표단체인 한국방송협회의 회장사인 MBC부터 그에 상응하는 공적책임과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0분 폐회 】